

향토지식재산권, “선점하라”

전 국적으로 향토지식재산권 조사발굴사업이 한창이다. 이에 제주지역에서도 고유한 향토지식재산을 발굴하고 상표권 및 특허출원 등 권리등록에 나서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향토지식재산’은 지역 주민이 생활 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이나 문화, 자연생태적 자산을 일컫는다. 특히 지역성과 전통성을 갖춘 재산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향토지식재산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큰 것이다. 유·무형의 향토지식재산은 지역특산물이나 설화, 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역의 향토지식재산 목록화에 성공한 경기도의 경우 1단계로, 31개 시·군에서 모두 2,156건을 발굴해냈다. 이는 다시 의·식·주생활 및 놀이·여가, 민간의료 등의 유형의 향토지식재산, 전래풍속, 민간설화, 민요, 지역축제 등 무형의 향토지식재산, 토종 동·식물과 자연생태환경 등으로 나뉘어 최종 444개의 목록분석을 마쳤다.

97년 6월부터 일찍 향토지식재산권 발굴에 나선 충청남도에서는 98년 지역특산물 43건, 전통기술 9건, 상표 등 3건으로 55건을 발굴해냈다. 여기에는 보령의 머드화장품 용기를 비롯 공주 은행난(卵) 등 다양하다.

제주지역에서도 자치단체들이 일부 공인등록 상표를 내세우는 등 브랜드 개발에 이제 눈을 뜨는 추세다. 지난해 8월 제주시는 2000년 4월 특허청에 출원했던 ‘돌이·멥이’ 심볼과 캐릭터의 문화상품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제주시는 향토지식재산권 활용 지역특화 상품으로 ‘돌이·멥이’ 및 제주시 상징물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쇼핑백을 비롯 편지지, 엽서, 양말, 지갑, 커피의류 등의 상품이 나온다.

북제주군은 최근 ‘우수특산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축산물 및 식품제조, 가공품 등 8개 특산물 생산업체에서 신청한 10개 품목 가운데 6개 업체 9개 우수특산품을 등록상표 사용가능 품목으로 선정했다. ‘북제주군 우수특산물등록상표’ 부착이 가능한 품목은 모두 70개다. 또 추가로 등록 신청한 170개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중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이 결정된다.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향토지식재산 발굴과 목록화가 가장 잘된 곳은 남제주군이다. 남제주군은 올해 초 400건 넘는 부존자원을 발굴했다. 남제주군이 향토지식재산 보존가치가 있는 부존자원을 조사한 결과 455건의 부존자원이 관내에 분포했다. 향토지식재산 부존자원으로는 전통기술 분야가 주식류 27건, 부식류 123건, 후식류 48건 등 210건이 확인됐고, 관광문화상품은 135건, 토종 동식물 등 지리적 자원이 77건, 지역특산물이 33건 등이다.

제주도의 경우 특허권 등 2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향토지식재산’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공무원들에게 숙지되지 않는 등 지자체들 간에 벌어질 수도 있는 ‘향토지식재산권’ 소유권분쟁에 대한 대처도 미흡한 실정이다.

유럽은 1958년 ‘리스본협정’을 체결하고 지명과 관련한 향토지식재산의 권리를 인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1995년 지역성에 근거한 ‘지리적표시제’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포함시켰다. 이미 제주도는 향토지식재산권을 뒤늦은 대처로 ‘한라봉’의 상표등록에 실패를 경험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라봉’이 고유명사화 돼 품종명의로 굳혀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에따라 최근 전남 나주와 해남 등지에서 재배되는 부지화, 즉 ‘한라봉’이 버젓이 ‘한라봉’으로 출하되

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향토지식재산이 침해된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향토지식재산이라고 해서 모두를 상품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차별화 한 것이 수

요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보면 제주 전역의 향토지식재산의 발굴과 등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한글 주소특허 남용 '빈축'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티피아의 독단적인 사업관행으로 인해 선의의 기업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티피아가 현재 국내 인터넷 서비스(ISP)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가 실제 기업과 전혀 상관없는 성인 사이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NHN의 지식검색서비스 '지식in'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면 각종 성인물 광고가 쏟아지며 성인사이트가 나타난다. 실제 확인 결과 '지식in'을 포함해서 '네이버검색' '드림위즈검색' '스타그래프트'가 모두 성인사이트로 이동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이란 글자를 잘못쳐서 'ekdma'이라고 입력하거나 '야후'를 잘못해서 영문으로 'dign'라고 입력해도 성인사이트가 화면을 가득 메운다. '서울지하철공사'를 입력하면 지하철공사 홈페이지가 나와야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토탈웨딩사이트가 버젓이 등장한다. 심지어 '사스'를 입력해도 성인사이트로 이동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네티피아가 자사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해 멀쩡한 회사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둔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로 인해 해당기업들은 적지않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은 네이버 지식in 검색사이트에 "네티말로 들어가려고 실수로 내마

블이라고 입력하거나 다음에 들어가려고 '다음'이라고 실수로 입력하거나 세이클럽을 오자로 '세이크럽'8이라고 입력하면 모두 성인사이트가 나온다"면서 "왜 이런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이같은 현실에 대해 "상식적인 단어나 고유명사 같은 것을 전혀 상관도 없는 곳에 팔아먹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네티피아는 이런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반명사를 경매방식으로 판매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7만명의 유명인 이름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로 인해 '이경실' '강호동'이라는 유명 연예인 이름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면 성인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

네티피아측은 "이에 관해서 해당기업에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면서 "또 해당기업에서 우리 회사측에 조정을 신청하면 회사 약관에 따라 선등록자들의 서비스가 취소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해당기업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선점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묻자, 네티피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자사의 사이트가 성인사이트로 이동한다는데 적지않게 분노하는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네티피아로부터 그런 공문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인터넷주소창에 한글을 입력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회원들이 검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금 웬만한 단어를 입력하면 모두 성인사이트로 넘어간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분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넷피아에 대한 도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

소리가 적지않다. 선의의 뜻으로 사용돼야 할 서비스가 불순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특허권을 남용한 넷피아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언젠가는 이로 인해 넷피아가 적지않은 곤혹을 치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출처 Moneytoday

히딩크 리더십으로 기업진단

2002년 한·일 월드컵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치러지면서 당시의 합성과 감동의 물결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모델이 실제 기업 경영에서의 문제점을 진단·처방하는데 활용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인 (주)사이버MBA는 히딩크의 리더십 모델을 바탕으로 기업내 팀들의 역량을 따져보는 모형을 개발, 대우자판·한솔제지 등을 경영진단했다.

그동안 히딩크의 리더십을 경영에 도입하지는 시도는 많았지만 실제 경영모델로 만들어 기업에 적용한 예는 드물었다.

회사 대표인 방석범(아주대 경영학과)교수는 “기업경영에 팀이 기여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히딩크 성공사례가 이를 잘 보여줘 경영진단 모형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방대표에 따르면 히딩크는 먼저 팀 전체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연고보다 개인 역량을 중시, 무명의 박지성 등을 발탁했다. 또 백기완 선생을 초청해 정신력 교육을 하는 등 강한 마인드를 키워주며 팀에서의 개인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처음 2개월 동안 선수들에게 오로지 패스 훈련만 시키는 등 단계(프로세스)를 고집했으며,

훈련의 발전 정도를 모두 숫자(지표)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주)사이버MBA는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들을 뽑아내 개인 역량·마인드·팀내 역할을 삼각축으로 삼아 조직목표·팀 성과로 연결하는 ‘모래시계 모형’을 만들었다. 또 이들 5개 요소 사이에는 각각 도전의식·신뢰·자신감·방침 받들기·업무추진·성과보상 등 6개의 ‘관계’가 있다고 방교수는 설명했다.

방교수는 “팀원이 ‘한번 해보자’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 ‘도전의식’이 생기고, 팀장이 팀원에게 마음으로 화답하면 ‘신뢰’가 생기며, 팀원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사이버MBA는 이러한 6개의 관계를 80여 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해 팀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뜯어 보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 형태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방교수는 “팀조직들을 진단해 보면 팀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뒷걸음질 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며 “국내 기업에 맞는 토종 모델이라는 반응을 얻어 특허청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을 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IBM, 특허 영향력 가장 좋아

미 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 CHI 리서치가 공동으로 발행한 특허 점수표에 따르면 IBM이 세계 IT 기업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놀로지 리뷰지 2003년 5월호 '2003 특허 스코어 카드'에서 IBM의 기술력 점수가 5668점으로 2위 업체인 HP의 2배 이상이며, HP·썬·MS·EMC·델·오라클의 합산한 점수보다도 높다고 평가 했다.

테크놀로지 리뷰는 CHI 리서치와 산업별 기업 특허 포트폴리오 순위를 조사하기 위해 획득한 특허 수와 기타 지표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표를 개발했다.

점수표에 있는 기술력 항목은 기업의 지적자산 파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획득한 특허 수와 기타 지표들을 합산하여 전체 미국 특허를 '현재 영향력 지수'를 곱해 산출했다. 2002년에 IBM은 3288건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획득해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IBM은 총 2만2357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이는 2번째로 많은 특허를 획득한 캐논보다 약 7000건 앞선 것이다. 또 이 기간 동안 IBM은 HP·인텔·썬·MS·델·애플·EMC·오라클·EDS를 포함한 미국 내 10대 IT 기업들이 획득한 전체 특허 수 보다도 많은 특허를 등록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병주고 약주는' 스팸메일

어 스링크 특허침해 고소 당하고 고객정보 도난 손해배상금 받고, 미국 3위의 인터넷 서비스업체(ISP) 어스링크(EarthLink)가 스팸메일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스팸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실리콘밸리의 신생업체인 메일블락스(MailBlocks)는 어스링크가 자사의 스팸방지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메일블락스는 소장에서 어스링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스팸방지 시스템이 자사의 서비스와 작동방식이 거의 유사해 특허 침해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일블락스는 이미 동일한 이유로 다른 3개의 회사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메일블락스의 스팸방지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메일 전송자를 지정해 익명의 스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메일 도착시 스팸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메일블락스는 지난 3월부터 이 서비스를 연 9.95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어스링크는 이날 자사의 이메일서비스를 악용해 매일 수만 통 이상의 상업적 스팸을 발송한 하워드 카맥에게 애틀랜타 연방지법이 명령한 164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하워드 카맥은 어스링크의 이메일계정 343개를 불법 입수하고 이들에게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이나 '만병통치약',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약 8억 5000만 통의 스팸메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디지털방송 특허전쟁

디지탈 방송·통신 및 인터넷 기술의 융합에 의해 3A, 즉 언제(Anytime)-어디서(Anywhere)-누구든지(Anyone) 고품질의 영상과 음질을 휴대폰, TV, PC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 기술이 융합된 종합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구축되면서 선진국들은 저마다 디지털이라는 신산업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되어 방송 및 IT분야의 특허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장려,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에 힘입어 연간 특허출원만 10만 여건, 전체 산업재산권은 30만 여건이 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권 출원대국이 되었다.

디지털 TV관련 기술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로는 필립스, AT&T, 소니, 마쯔시타, 톰슨, 제니스, RCA/Thomson 등 세계 굴지의 전자업체들로, 이들 업체들은 디지털 TV관련 핵심기술인 전송, 채널코딩(암호화), 다중화 및 디스플레이, 영상 및 음성신호압축 등에 대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취득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는 멀티미디어 영상매체의 본 고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HDTV의 상용화와 더불어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디지털 HDTV 개발에 나선 국내 관련업체들에 대해 기술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첨단 멀티미디어 디지털 방송 시대에 침예하게 대립될 특허전쟁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디지털 TV 관련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90년 중반 이후 매년 20~30%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핵심

특허 출원은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10,632건이고 이중, 전송분야가 3,510건, 디스플레이분야 2,595건, 영상 및 음성신호 압축분야가 2,217건, 다중화 및 데이터방송 분야가 1,567건, 케이블 및 위성분야가 706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데이터 방송기술 분야에서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양적으로 훨씬 앞서 있는데, 향후 차세대 데이터 방송기술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어적 특허출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국내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원천기술에 관한 특허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특정분야에서는 선진국들과 다른 독자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오히려 원천기술 보다 기능이나 성능면에서 보다 우수한 응용 및 개량기술의 개발로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고 그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은 첨단기술 일수록 자국은 물론이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특허표준(Standard of Patent)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허표준은 특허기술의 독점 사용권뿐만 아니라 상용화된 권리가 인간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기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TV 분야의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국내 업체들은 디지털 TV의 칩셋, 디스플레이 등 지속적인 핵심 부품개발을 통한 가격과 성능면에서 비교우위 확보는 물론, 요소기술들에 대한 미들웨어, 데이터 방송 소프트웨어, MPEG 등의 디지털 TV를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의 특허확보를 통한 로열티 부담 경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디지털TV 수신기, MPEG과 같은 요소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특허표준화를 통해 차세대 디지털방송의 강국실현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산업계·학계·

연구소·정부주관부처로 이루어진 디지털TV 기술개발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요소기술을 파악하여 개발주체간 역할분담, 개발 내용 정립 등 매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최초 전화발명가는 이탈리아인

‘최초의 전화 발명가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메우치’ 이탈리아가 전화 발명가로 알려진 벨보다 먼저 전화기를 발명한 이탈리아인 안토니오 메우치를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오늘날 전화를 사용하는 이탈리아인들중 전화 발명가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 안토니오 메우치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1835년 고향 피렌체를 떠나 다시는 유럽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몇년간 쿠바에서 일한 뒤 1850년 뉴욕에 도착해 이탈리아를 통일한 가리발디 장군의 친구가 됐다. 메우치는 이후 평생을 빈곤속에서 살다가 81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메우치는 일터에서 병상에 누워지내는 아내와 통화하기 위해 ‘텔레트로폰’이라고 명명한 기구를 발명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1871년 특허를 냈

지만 재정적 후원자를 찾지 못해 상용화하는데 실패했다. 5년뒤 스코틀랜드 출생의 미국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현재 우리가 전화기로 알고 있는 기구를 특허 출원하는데 성공했다.

로마에서 열린 전화발명 축하행사에 참석한 MIT연구소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는 “발명품을 통해 돈을 버는데 실패한 것은 메우치만이 아니다”고 회상했다. 그는 “벨의 가족들중 누구도 돈을 벌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벨의 후손들중 부자는 없었다”면서 벨도 역시 빈민으로 생을 마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최근 메우치를 전화 발명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했으며 카롤로 참피 이탈리아 대통령은 통신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화와 라디오가 모두 이탈리아인에 의해 발명됐다고 치하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사스 예방·치료기술 개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를 예방·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생명

공학 벤처기업에 의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바이오리더스와 엠디랩은 “이번 개발한 기술을

이용할 경우 체내에 부작용없이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어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에 사용된 사스 바이러스 항원은 바이러스 표면을 덮고 있는 표면항원으로 체내에 유입돼도 독성이 없기 때문에 신체에 별다른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게다가 이 기술은 혈액내 면역기능인 체액성 면역과 코와 장 등의 점막내 면역기능인 점막면역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고 유산균을 치료·예방의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장

기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리더스의 이종수 박사는 "사스 바이러스와 같은 계통의 코로나바이러스인 PED(돼지유행성설사병)와 TGE(전염성위장염) 바이러스의 표면항원을 이 기술을 이용해 유산균에 접목, 돼지와 쥐에 투여한 결과 PED와 TGE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벤처기업은 국내는 물론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 사스 바이러스 항원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디지털 데이터 전송, 속도경쟁 뜨겁다.

디지탈 데이터의 전송속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는 데이터 통신이 시작된 1984년 당시의 전송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꿈의 속도가 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화선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서 8Mbps의 전송속도만으로도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매력적인 전송속도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 50Mbps의 VDSL 서비스가 등장했고, 이러한 기술 개발 속도에 힘입어 몇 년 후에는 100Mbps 이상의 초고속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러한 속도 경쟁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초고속 가입자망은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통신의 역사는 1984년 CCITT에서 다이얼모뎀의 표준인 V.21bis를 제정하므로써 본격적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데이터 전송속도는 2,400bps로 1초에 한글 150자를 전송, 즉 1초에 원고지 한 장 정도

를 전송하는 속도에 불과하였다.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최대 50Mbps의 전송이 가능한 VDSL이 등장하였다. 이는 초기 데이터 전송속도 2,400bps에 비해, 초당 데이터 전송량이 약 2만 배나 증가한 셈이다. 이를 문서량에 비유하면, 200자 원고지를 1초에 20,000여장을 전송할 수 있는 속도이다. 200자 원고지 700페이지 이상을 장편소설로 분류하는 기준에 의하면, 50Mbps의 전송속도는 200자 원고지 1,000페이지를 한 권으로 하는 20부작 장편대하소설을 1초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속도인 것이다.

특히로 본 초고속 가입자망 전송 기술은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데이터 통신의 역사와 유사한 동향을 보인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는 초고속 가입자망 전송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출원 건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과 199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출원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후로도 지

속적인 출원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유선 초고속 가입자망 전송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이 90년대 말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경향이 있으나, 이는 관련기업에서 유선이 아닌 무선 전송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의 안정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유선 초고속 가입자망 전송기술에 대한 기술개발투자 및 특허출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책이나 영화 제목의 상표성

책이나 영화 제목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책의 출판사나 영화의 제작자가 책이나 영화제목에 상표등록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여 2차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 작품단독으로 상표등록 얻는 것을 포기하고, 시리즈물의 일부로서 출원하는 것 밖에는 없다. 이것은 Single title rule 이라고 하여, USPTO가 지정한 법원도 지지하는 기준이다. (상표심사편람 2002년 제3판, 제1208.08).

이 기준의 전제로는 책이나 영화의 제목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목에 의해 작품의 출처를 특정할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제목을 실마리로 하여 작품이 속하는 카테고리 중에서 특정의 책이나 영화를 식별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제목에 의해 다른 작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되며, 이것은 책이나 영화 제목도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상표등록에 대신할 보호로서, TRB(Title Registration Bureau)에 극장용 영화 제목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이용이 생각될 수 있지만, 전자는 예를 들면 가정용 비디오로 만들 때에 다른 제목을 붙이는 것을 방지할 수 없고 후자는 식별력의 취득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비용이 많이 든다.

나아가 실제상의 문제는 저작권과의 관계에 있다. 상표등록은 무기한으로 갱신가능하지만 저작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단독작품의 제목에 상표등록을 인정하면 어떤 작품을 자유로이 복간한 경우에는 원래의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태가 제기된다. 그러나 단독작품의 제목에 관한 상표등록은 저작권의 존속기간과 일치한다는 주석을 붙이는 것으로 해결가능하다.

적어도 USPTO와 법원이 단독의 책이나 영화의 제목에 대해 당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시종일관 타당한 취급을 하는 것이 업계에 유익할 것이다.

출처 National law Journal IP특집